

제23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
(기획경제국 세무1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37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0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0. 7.

2. 제안이유

202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한국지방세연구원¹⁾ 운영비 출연 : 13,341천원
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.2/10,000를 출연금으로 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
- 나. 2023년 출연금 산출내역
 -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111,180백만원) × 1.2/10,000 = 13,341천원
 - (※ 산출근거규정 :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)

1)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개편,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 2011년 4월 설립되었음.

다.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개정(2020. 9. 8 공포 및 2021. 1. 1 시행)
으로 출연금 출연비율 변경

구 분	2011~2020년	2021년	2022년부터
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×	1.5 / 10,000	1.3 / 10,000	1.2 / 10,000

라. 연도별 출연금 현황

(단위 : 천원)

해당년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출 연 금	9,966	10,737	11,346	10,898	12,064	13,341

4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나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, 제152조

다.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

5. 검토의견

① 제안이유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2023년도 금천구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② 주요내용
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1만분의 1.2를 곱하여 산출함.

- 자치구의 보통세는 등록·면허세와 재산세, 지방소비세 3개 세목임.

산출내역 : $111,180\text{백만원} \times 1.2 / 10,000 = 13,341\text{천원}$

↳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

③ 종합의견

-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 법령 1부. 끝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[제목개정 2014. 5. 28.]

지방세기본법

[시행 2022. 2. 3.] [법률 제17768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
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, 감사 2명을 둔다.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

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,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·선출하되, 이사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

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,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,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32조와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·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29.>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동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22. 6. 29.] [대통령령 제32733호, 2022. 6. 28., 타법개정]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31., 2020. 9. 8.>

1. 1만분의 1.2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